

2000년도 최저생계비

1999. 12. 1

보 건 복 지 부

면
빈

1. 최저생계비 조사목적 및 추진경과

□ 조사목적 · 근거

-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는 바,
 -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결정의 근거가 되며,
 - 각종 사회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됨
- 이를 위하여, 생활보호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2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 · 공표하고(제5조의2 제2항),
 - 5년마다 계측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제5조의2 제3항)
- ※ '94년 계측조사 이후 금년이 5년이 되는 시점이므로 조사 실시

□ 조사경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연구용역계약 체결('99. 3. 3.)
 - 연구기간 : '99. 3 ~ 11.
 - 계약금액 : 182백만원 ('99. 7. IBRD에서 9만8천달러 추가지원)
- 최저생계비계측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실시
 - 1차조사('99. 4.) : 일반국민 15,000가구 대상 가구일반사항조사
 - 2차조사('99. 7.) : 소득 하위 40%이하 1,500가구 대상 가계부조사
- ※ '94년의 경우 1차조사 3,000가구, 2차조사 600가구

- 실태조사 결과분석 및 최저생계비 산출('99. 8 ~ 10)
- 계측결과 접수('99. 11. 5)
- ※ 조사설계단계부터 각 과정마다 경실련·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와 민주노총·한국노총 등의 노동단체, 경총 등의 사용자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 및 정책토론회를 수차례 개최

□ 심의경과

- 중앙생활보호위원회 구성('99. 10. 29)
 - 관련 전문가와 노동계·경영계·언론계·농민계·여성계 등 각계대표, 피보호자 대표 및 관계부처 공무원 등 총 19명으로 구성(명단 별첨)
- 제1차 전체회의('99. 11. 12)
 -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특별소위원회」 구성
- 특별소위원회 회의('99. 11. 18)
 - 마켓바스켓의 구성, 품목별 가격 및 사용량 등 계측결과에 대한 세부검토
- 제2차, 3차, 4차 전체회의('99. 11. 23, 27, 30일)
 - 주요비목별 세부검토를 거쳐 '99년도 계측결과, 2000년도 최저생계비 추정방법 및 공표안 등 의결

2. 2000년도 최저생계비

□ '99 최저생계비 계측결과(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구 분 (가구균등화지수)	1인가구 (0.349)	2인가구 (0.578)	3인가구 (0.795)	4인가구 (1.000)	5인가구 (1.137)	6인가구 (1.283)
대도시	343,123	568,267	781,613	983,161	1,117,854	1,261,396
중소도시	323,480	535,735	736,867	926,877	1,053,859	1,189,183
농어촌	280,054	463,814	637,945	802,447	912,382	1,029,540

※ 중소도시 2인가구 기준 1인당 최저생계비 : 267,867원

□ '99 최저생계비 심의결과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이상
대도시	334,217	553,516	761,325	957,641	1,088,838	1,228,653
중소도시	314,574	520,984	716,579	901,357	1,024,843	1,156,441
농어촌	270,784	448,462	616,829	775,885	882,181	995,460

※ 중소도시 2인가구 기준 1인당 최저생계비 : 260,492원

□ 2000년도 최저생계비

'99년 심의결과치에 예산안의 물가상승 전망치인 3%를 적용하여 2000년도 최저생계비를 결정기로 함 (제4차 전체회의)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이상
대도시	344,243	570,122	784,164	986,370	1,121,503	1,265,513
중소도시	324,011	536,614	738,076	928,398	1,055,588	1,191,134
농어촌	278,907	461,915	635,333	799,161	908,646	1,025,324

※ 중소도시 2인가구 기준 1인당 최저생계비 : 268,307원

□ 공표내용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발표하되, 1인당 최저생계비와 생활보호자 실급여액을 명기함(제4차 전체회의)

○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이상
금액(원/월)	324,011	536,614	738,076	928,398	1,055,588	1,191,134

○ 2인가구 기준 1인당 최저생계비 : 268,307원

○ 실급여액

$$\boxed{\text{실 급여액}} = \boxed{\text{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 \boxed{\text{가구 총소득액}} - \boxed{\text{타법에 의한 공제액}}$$

3. 중앙생활보호위원회의 조정내용

□ 중앙생활보호위원회 의결사항

'99.11.12.부터 4차례의 전체회의와 특별소위원회 회의를 거쳐 11.30. 보사연의 계측결과 및 2000년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최종 심의·의결함

○ '99최저생계비 계측결과

- 사회보험료는 실태조사자료를 확인한 결과 고용보험을 삭제하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지역가입자로 조정
- 보험료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하위 40%이하계층의 평균보험료를 파악하여 검토·결정토록 위임(제4차 전체회의)
- 담배는 위원회 의결안에는 포함시키되, 제외여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종결정토록 위임(제3차 전체회의)
- 이외에는 보건사회연구원 계측결과대로 의결함

○ 2000년도 최저생계비 추정방법

- 수준균형방식, 소비자물가 및 생활물가상승률 적용방식 등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추정방식에 대한 검토결과,
- '99년도 최저생계비(심의결과치)에 내년도 예산안의 소비자물가상승 전망치인 3%를 적용하여 2000년도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로 함 (제4차 전체회의)

○ 공표안

-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발표하되, 1인당 최저생계비와 생활보호자 실급여액을 명기기로 함(제4차 전체회의)

□ 세부 조정결과

① 사회보험료의 조정

- 제3차회의 의결에 따라 하위 40%이하 가구주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 정규직 근로자보다 임시·일용직, 자영자, 미취업자 등이 더 많아, 고용보험료를 삭제하고 국민연금·의료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조정함
 - 단, 보험료 산정방식은 저소득층의 사회보험료 부담실태를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 소득 하위 40%이하 계층의 평균적인 보험료를 적용하는 안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검토·결정하도록 위임함(제4차 전체회의)
-
-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분석 결과, 국민연금의 경우 지역가입자 하위 40%이하 계층의 평균보험료는 12,358원이나 이는 51.5%의 납부예외자를 제외한 소득신고자 중 하위40%의 평균보험료로 이를 바로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고, 또한 현실적으로 이들 대부분이 납부예외자임을 감안하여 연금보험료를 제외하는 것도 전국민연금제도의 조기정착이라는 정책취지에 반하므로 정책적 차원에서 최하등급의 보험료인 6,600원을 반영함
 - 의료보험료는 연금과는 달리 납부예외제도가 없음을 감안하여 하위 40% 평균보험료인 12,750원을 적용함(단, 농어촌 지역은 15% 감면율을 적용하여 10,838원)

사회보험료 조정결과

		당 초	변 경	증 감
대도시 중소도시	계	33,570원	19,350원	△14,220원
	국민연금	21,600원	6,600원	△15,000원
	의료보험	9,600원	12,750원	증3,150원
	고용보험	2,370원	-	△2,370원
농어촌	계	32,700	17,438원	△15,262원
	국민연금	9,800	6,600원	△3,200원
	의료보험	22,900	10,838원	△12,062원
	고용보험	-	-	-

② 담배관련비용 조정

○ 건강에 해로운 담배를 최저생계비 품목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위원회 의결안에는 담배를 포함시키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종결정토록 위임함(제3차 전체회의)

- 검토결과, 실태조사결과를 반영하는 최저생계비의 산정원칙상 담배도 필수품임에는 틀림없으나(성인 남성 흡연율 73%),
 - 국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정부가 최저생계비에 담배를 포함하는 것은 규범적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어 제외함

담배관련비용 조정결과

		당 초	변 경	증 감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계	11,300원	-	△11,300원
	담배	11,000원	-	△11,000원
	라이타	300원	-	△300원

4. 조사결과와 활용

- 2000년도 생활보호대상자(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선정시 소득기준으로 적용됨
 - 생활보호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뿐만 아니라 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함
-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 단일기준은 2003년부터 적용
- 2000. 5~7월 실시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선정을 위한 저소득층 전면 재조사시 자산조사의 기준선이 됨
- 2000년도 10월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보충급여의 기준금액이 됨
- 기타,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부가급여의 선정 및 급여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됨

<붙임> 중앙생활보호위원회 위원명단

성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이종윤	보건복지부차관	위원장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부위원장, 특별소위위원장
윤후상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유낙준	대한 성공회 신부	
이혜경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특별소위위원
엄규숙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김정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2부장	
이연임	전국농민회총연맹 통합의보 정책기획단장	
김순복	피보호자 대표	
조우현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특별소위위원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특별소위위원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특별소위위원
문진영	서강대 수도자대학원 교수	특별소위위원
박능후	보사연 사회보장연구실장	특별소위위원
황덕순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안종근	노동부 고용총괄심의관	
변양균	기획예산처 사회예산국장	특별소위위원
이용희	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장	
강윤구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	특별소위위원